



#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점

문진영 (중국인민대학 문학원 재학)  
김병철 (중국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교수)

## ■ 머리말

중국은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막대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각종 국제적 행사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과 국제위상을 크게 제고시켰다. 1980년대 중국의 GDP는 2,02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무려 30배 증가한 5조 8,0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대외적인 문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을 기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새로운 단계로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가시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있어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 2010년 발표된 중국 500대 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500대 기업 중 국영기업과 정부투자기업의 수는 331개로 전체 기업 수의 66%를 차지하였으며, 영업수익은 22조 93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전체 기업 수익의 85%를 차지했다.

본고는 중국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8년 중국 개혁개방정책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중국 국유기업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 중국 국유기업의 개념

개혁개방 이전 중국은 사회주의체제 국가로서 생산자재가 공유, 즉 ‘전인민 소유’라는 의미로 사회주의 공유제적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며, 기업은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이나 사업소가 관리, 경영하였다. 따라서 당시 중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시장경제하의 사영기업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1978년 12월 이전까지 중국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 시기의 경제관리체제는 중앙집중식 계획경제체제로 모든 경제적 권한이 고도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모든 영역의 경제는 정부의 계획 아래 조직, 운영되는 체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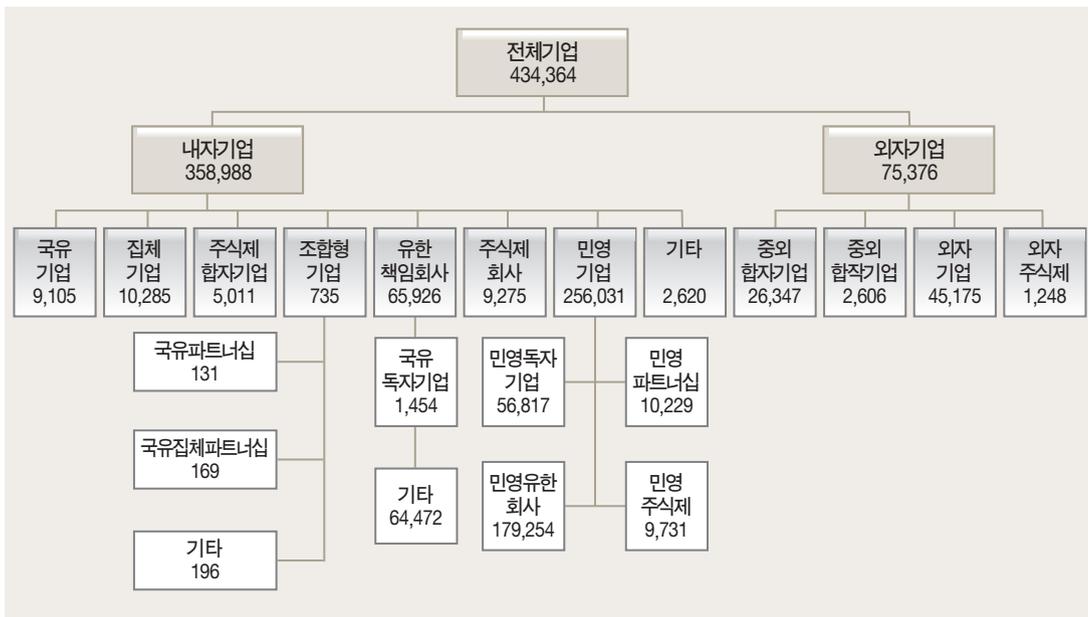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에서 과거의 폐쇄적이고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변모시키는 적극적인 경제개혁·개방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에는 1978년 이후 국유기업의 ‘경영’ 개혁도 포함되었는데, 그 개혁의 주요 방향은 기업경영자의 권한 확대와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개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요약된다. 1992년 이후에는 전체 경제체제 개혁의 중점을 국유기업에 두고 현대 기업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다양한 개혁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 1997년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5차 대회에서 핵심 국유기업에 대한 주식제 도입과 국유기업의 집단화를 통한 전략적 배치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방향을 채택한 바 있다.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의 출범 이후, 중국정부는 국유자산관리체계를 개혁하여 국유기업 개편과 재산권 양도제도를 규정하였으며, 국유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여러 법안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민간투자 위축현상의 심화로 중국 당국은 2005년 구 36조를 시행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이후 수정된 신 36조를 공포하였다. 2011년 국유기업의 12·5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기업의 기업혁신방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발표하였다.

중국에서 국유기업이란 회사소유자가 국가인 기업을 가리키며,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이나 사업소가 관리, 경영하는 기업이다. 이를 다른 이름으로 전민소유제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자재가 공유, 즉 ‘전인민 소유’라는 의미로 사회주의 공유제적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국유기업은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나 경영권은 독립한 경영실체’로 정의할 수 있다. 1993년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존의 국영기업을 국유기업으로 수정

하였는데,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지향하는 경제체제 개혁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1993년 헌법 개정 때 ‘국영기업’이라는 용어를 바꾸어 ‘국가가 소유와 동시에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소유하되 경영을 기업 자신이 자주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기업 발전을 위한 경영자주권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별 무리 없이 통용되고 있다. 2009년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국유자산법」에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새로운 호칭으로 ‘국가출자기업(國家出資企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첫째, 국유자산은 국가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에 출자해 형성된 권익을 가리킨다. 국가출자기업은 국가가 출자한 특수법인기업, 국유독자기업, 국유지분 우위기업, 국유지분 참여기업을 포함한다. 둘째, 국유기업은 광의와 협의의 국유기업으로 구분되는데, 광의의 국유기업은 과거의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 기업과 국영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적 의미의 국유기업과 국유지분이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파트너십을 모두 포함한다.

[그림 1] 중국 소유제 형태별 기업 분류



주: 수치는 2009년 기준 소유제별 기업 수.  
 자료: 중국 통계연감(2010).

중국에서 기업은 소유제 형태별로 크게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등 2종류로 구분되는데, 내자 기업에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주식제 합자기업, 조합형 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제 회사, 민영 기업 등이 포함되며, 외자기업에는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자기업, 외자주식제가 포함 된다(그림 1 참조). 그 중 국유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유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분 율에 따라 특수법인기업(特殊法人企業), 국유독자기업(國有獨資企業), 국유지분 우위기업(國有 控股公司), 국유지분 참여기업(國有參股公司)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표 1〉 정부의 지분율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기업 유형	관련 규정	해당 업종	비고
특수법인기업 (特殊法人企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전액출자, 설립</li> <li>· 회사법이 아닌 특별법 적용</li> <li>· 공공재 생산에 투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위산업</li> <li>· 항공우주산업</li> </ul>	·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통해 유지됨
국유독자기업 (國有獨資企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에서 전액출자, 설립</li> <li>· 회사법 적용</li> <li>· 거시경제정책 조정대상</li> <li>· 공공의 이익 추구 위주, 부수적 으로 경제적 이익도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 수도</li> <li>· 전력, 천연가스</li> </ul>	· 대부분 전형적인 자연독점기업 과 자원기업임
국유지분 우위기업 (國有控股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전체 자본 중 국가소유 비중이 높아 국가에서 실질적 으로 지배하는 기업</li> <li>· 회사법 적용</li> <li>· 경제적 이익 추구 위주, 부수적 으로 공공의 이익 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 통신, 자동차</li> <li>· 제약, 담배제조</li> <li>· 공항, 항공, 은행</li> </ul>	· 대부분 준자연독점기업과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
국유지분 참여기업 (國有參股公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일반 주주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기업</li> <li>· 회사법 적용</li> <li>· 공공이익 추구 부담 전무</li> </ul>	· 모든 업종	· 정부의 지분참여는 국유경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며, 이 외 기타 추가적인 의무는 부과 하지 않음

자료: 「국유기업 개혁 중 정부 작용 연구」.

또한 국유기업을 관리감독기관에 따라 분류하면, 국유기업은 일반적으로 중앙기업, 중앙부 처 관리기업, 지방국유기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표 2〉 관리감독기관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기업 유형	주요 관리감독 부처	제품 유형	해당 업종
중앙기업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공공재	방위산업, 통신, 전력, 수도
		자연독점제품	석유, 천연가스, 광산
		경쟁성제품	일반 제조업, 건축업, 무역업
중앙부처관리기업	재정부	금융	은행업, 보험업
	국무원기타 부처 또는 정부산하단체	전매품, 문화상품	담배, 금, 철도운송, 항만, 방송, 문화, 출판
지방국유기업	지방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매우 다양	전 업종

자료: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홈페이지.

한편 국유기업을 활동 업종에 따라 분류하면, 국유기업은 크게 비금융계 국영기업, 금융계 국영기업 두 가지로 구분한다.

〈표 3〉 활동 업종에 따른 국유기업 분류

기업 유형	주요 관리감독 부처	해당 업종
비금융계 국영기업	국무원 국유자산관리감독 위원회, 지방 국유자산관리감독 위원회	제조업, 무역업, 건설업, 농업, 이종관리기업
금융계 국영기업	재정부	은행, 신탁투자회사,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기타 금융기관

자료: 건흥리서치 정리(2010, 4).

## ■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정

### 제1단계(1978~1992년): 기업 자주권 부여 및 확대

제1단계는 개혁개방과 더불어 기업 자주권이 부여되고 확대된 시기이다. 1979년 9월 국무원에서 국영공업기업의 경영 자주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래, 국가와 기업 간의 분

배관계를 재조정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윤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윤유보제<sup>1)</sup>를 도입하였으며, 1981년 기업의 경제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확대시키면서 기업경영을 공장장 책임하에 두었다. 또한 「국영공업기업 유동자금 전액대부 실행에 관한 잠정규정」 등 다섯 가지 규정을 담은 규정(規定)<sup>2)</sup>을 공포했고, 지방정부의 통일된 기준의 시범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1979년 말 4,200개에 이르던 시범 기업은 1980년에 총 6,000개로 증가하였다. 1981~1982년 공업과 교통 운수업에 적용한 ‘경제책임제’와 1983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개세제도(利改稅制度)<sup>3)</sup> 역시 납세 이후의 이윤 일부는 국가로 귀속되고 일부는 기업에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세제의 형식을 통하여 정부와 기업 간 이익분배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명령과 복종의 상하 주종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국유기업의 경영책임과 기업자주권의 신장을 도모했다.

1987년부터는 기업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여 시장 지향의 독립된 기업체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기업에 대해서는 청부경영책임제<sup>4)</sup>를 실시하고, 소형 국유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의한 임대경영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개혁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불명확한 기업의 소유권 관계로 말미암아 국유기업 자산에 대한 책임한계, 경영 손익에 대한 기업의 책임한계 등과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다. 이에 중국 당국은 1985년 ‘주식제 시범 시행’이라는 정책을 제시하여 소유권 개혁을 통한 소유자의 국유 자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생산요소의 합리적인 유통과 배치를 꾀한다.

- 1) 기업 및 근로자에게 동기유발 요인을 제공하여 생산적극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과거 국가재정에 공납되던 기업이윤 중 일부를 자체 유보하여 생산발전기금·종업원복지기금·보너스기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 2) 다섯 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국영공업기업경영관리 자주권 확대에 관한 약간의 규정, ② 국영기업 이윤확보 실행에 관한 잠정규정, ③ 국영공업기업의 고정자산세 징수에 관한 잠정규정, ④ 국영공업기업의 고정자산감가상각률을 높이는 것에 관한 규정, ⑤ 국영공업기업에서 유동자금의 전액대부 실행에 관한 잠정규정.
- 3) 국유기업이 생산활동의 결과로 얻게 된 이윤을 정부에 상납하던 과거의 관행을 바꾸어, 법규에 규정된 세목과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 4) 청부경영책임제는 기업이 기업의 소유자로서 국가와 일정기간 동안 상호간의 책임·권리 및 이익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의거하여 해당 기업의 자산을 자주적으로 관리·경영하는 권리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한다.

## 제2단계(1993~2002년): 현대 기업제도 확립

1993년 11월 14일 개최된 제14기 3중전회가 채택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는 “국유기업을 현대 기업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방향이며,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산권 및 권리의 명확화, 정부·기업의 분리, 과학적인 관리가 현대 기업제도의 주요 내용”임을 천명하고, 국유기업의 재산권 구조의 다양화를 위한 업무를 시작하였다. 과거의 개혁이 소유권문제의 주변에 대해 초점이 두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는 소유권 구조의 혁신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산권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는 개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었다. 1994년 국무원은 현대 기업제도 확립을 위해 각 성시(省市)와 자치구에 시범기업 100곳을 지정했다. 하지만 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국유기업은 경영난을 겪었고, 국유기업의 2/3가 적자와 잠재적 손실을 기록했다. 1997년 중국정부는 현대 기업제도 확립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기업 지원계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적자를 기록했던 6,000여 개 국유기업이 4,000여 개로 축소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현대 기업제도를 확립할 수 없고 전반적인 국가경제 수준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999년 9월 제15기 4중전회에서는 국내경제 발전과 보유자산 이동과 재분배를 통한 국유기업 전략적 개편 실시, 시장과 산업정책에 부합한 개편으로 주요산업 장려와, 국유자산 분배구조 고도화 및 기업구조와 투자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우수기업 지원 및 낙후산업 도태 실시를 밝혔으며, 국유기업의 기업제도 개혁을 통한 효과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편 국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98년 7월 「국무원 감사특과원 조례(國務院稽察特派員條例)」를 반포하여 국유 중점 대규모 기업에 감사특과원을 파견하여 감독을 강화했다. 1999년 국무원 총리는 전국경제공작회의에서 ‘감사특과원제도’를 ‘감사회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했고, 1999년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유독자기업의 감사회는 국무원에서 파견하거나 성급(省級) 인민정부에서 파견한다’고 규정했다.

## 제3단계(2003~2010년): 국유자산관리감독기구 특설 및 신 36조

현대 기업제도 수립을 위한 각종 조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유자산 관리체제 개혁이다.

사실상 이전까지는 대형 국유기업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부처 간의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서 공공관리와 국가소유권 기능을 담당하는 등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은 폐단이 존재했다. 2003년 제16기 3중 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정비 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해 ① 국유자산 관리 감독 체제 건설, ② 국가의 공공관리 임무와 출자인으로서의 임무 분리, ③ 국유자산 관리기구는 권한 위임을 받은 국유자산에 대해 법에 따라 출자인 역할 수행, ④ 소유권자 권익 보호, ⑤ 시장 주체로 기업의 법적 권리 수호, ⑥ 기업의 국유재산 증식 장려, ⑦ 국유자산 유실 방지, ⑧ 국유자산 경영 예산제도와 경영 실적 평가 체계 구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가 특설되었으며, 2004년에는 각 성에도 유관부서가 설립되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중앙기업의 투자자가 명확해졌는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설립한 기관이 투자 관련 직무를 수행하며 공공관리부서와 분리됨으로써 정경분리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 사회와 감사회에 대한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관리는 투자자 직무수행인 동시에 기업이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유도했으며, 대표적인 국유자산 투자자인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를 통해 소유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유자산가치 보증과 상승을 실현했다. 이 단계에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정상궤도에 진입했으나 경영자 권한이 불명확하고 주주권 다원화가 미진했다. 2003년 말까지 189개 중앙기업 중 투자주체 다원화를 실현한 기업은 9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단일 투자자 체제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말까지 157개 중앙기업 모회사 중 ‘회사법’에 따라 개혁한 기업은 22개사로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2007년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기업의 국유자산 관리감독에 관한 잠정조례」에 근거하여 기업개편, 재산권 양도, 자산평가, 실적평가, 재무감독 등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국유기업 개편과 재산권 양도제도를 규정하고 국유경제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유기업의 개혁이 가시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은 2005년에 민간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민간기업 지원을 통한 비공유제 경제발전 방안(신36조)」을 발표한 뒤 2010년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2005년 국무원에서는 ‘자영업, 민영기업 등 비국유 경제발전 장려의견’을 발표하여 일부 국유자본에 의해 독점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민영자본의 진출을 허용했지만 집행세칙이 발표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신36조’는 ‘구36조’가 가졌던 정책실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롭게 발표한 것으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국진민퇴(国进民退) 현상, 투자과열 현

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신36조’는 국유 독점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국내 민간자본의 투자유도, 명확한 세부조치, 국유자본의 투자범위 명시, 민간투자의 진입 허용, 정부의 역할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제4단계(2011~2015년): 12차 5개년 계획

2011년 발표된 국유기업 12·5개년 계획은 국유경제의 전략적인 조정과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유동 체제를 강화하는 데 그 초점을 두었다. 조건이 구비된 국유 대형기업의 상장 및 상장 조건에 미달한 대형 국유기업 주주권의 다원화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고, 국유 단독 자본을 유지하는 대형 국유기업은 회사체제 개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 염업(盐业) 분야의 체제 개혁 및 전력 체제의 개혁과 운송 배치분리의 시험적 실행의 안정적 전개, 전기통신, 석유, 민간항공 및 시정부의 공공사업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 산림 육성 및 국유 산림 지구의 관리 체제 개혁과, 독점 업종의 개혁 심화, 시장진입 확대,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구도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공공관리 기능 및 국유자산 출자 기능을 분리하고 국유자산 관리 및 국유기업 관리감독체제를 구축할 것이고, 국유기업을 공익형 혹은 경쟁형으로 분류하는 등 모든 국유기업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국유자본의 경영예산 및 소득분배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독점시장 국유기업 개혁은 국유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그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고, 소득분배제도를 개혁하며 독점시장을 개혁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12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개혁안을 통해 중국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한계점

### 국유기업의 민영화

중국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던 국퇴민진(國退民进)정책이라는 민영화 과정에서

부패현상이 증가하고 국유자산 유실과 대량해고가 발생함에 따라 2004년 이후 국진민퇴(國進民退)정책이라는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민간투자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과 보호조치로 인해 국유기업의 관리능력이 약해지고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또한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민영기업들에게는 경쟁압박으로 작용해 민영기업들의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국유기업은 총 공업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총 이윤, 총 공업 생산액, 일자리 수는 민영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국진민퇴정책은 민간부문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져, 수출 부문에서 민간기업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중국의 대외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진민퇴정책의 효용성 제고가 요구된다.

## 국유기업의 독점

지난 30여 년간의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은 수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러나 국유기업들은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특권을 누려옴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게 되었다. 특히 석유, 천연가스, 통신, 전력, 담배, 석탄, 항공, 금융, 보험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들에서 국유기업은 기존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 경영을 해 왔다. 현재 중국 독점산업에서 주요 기업들은 거의 모두 중앙 국유기업이며 자연 독점과 행정 독점이 병행되면서 산업의 기술진보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게 설정되어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상당수의 독점산업의 경우 높은 요금과 낮은 서비스 품질,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고임금, 독점에 따른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적잖은 사회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 ■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유기업 개혁이 다방면에서 실시된 결과 국유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기업의 경영 자주권이 신장되었고, 경영 성과로서의 이윤의 일부를 기업에 유보시킬 수 있게

되었다.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시장화 진전과 더불어 추진된 이러한 개혁은 국유기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시점이다. 특히 국유기업의 개혁은 중국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국유기업의 개혁의 성공 여부가 중국경제의 회복과 장기성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독특한 정치체제로 인해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중국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국유기업 독점화 해결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국유기업 발전을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陈亮(2009), 「我国国有企业改革的绩效分析与实证研究」, 『经济研究参考』.
- 何伟(2009), 「国有企业改革遇到新难题」, 『中国流通经济』.
- 李荣融(2008), 「五年来国有企业改革发展取得重大进展」, 『工业审计与会计』.
- 李杨·林红(2010), 「国进民退现象下国有企业体制改革问题的思考」, 『消费导刊』.
- 梁玉红(2009), 「进一步深化国有企业改革的思考」, 『江西教育学院学报』.
- 孙志明(2009), 「三十年国企改革的阶段特征」, 『社会科学战线』.
- 张卓元(2008), 「30年国有企业改革历程评析」, 『经济与管理研究』.
- 2010 中国统计年鉴.
- 2010 中共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的建议.
- 건홍리서치(2010), 『중국 국유기업 개혁 연구보고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한중일 공기업 개혁정책의 변천과 성과』.
- 박광희(2006), 『중국개혁의 성공과 부작용』, 학고방.
- 삼성경제연구소(2008), 『중국 대형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관리체계혁신』.